

종합감사

2015년도

대구테크노파크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2016. 2.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감사관실]

(재)대구테크노파크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 201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례와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경쟁력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범위

- 2012. 9월 이후 추진한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으로 정하였습니다.

3. 중점 감사사항

- 주요 목적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 출연금 및 수입금 관리, 예산결산의 적정성 여부
- 사업비 편성 및 지출업무의 적정여부
- 인사 관련 규정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12. 3 ~ 12. 11(7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7명

II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 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정	회수	지급	계	장계	훈계	주의
23	7	12	4	42,729		42,729		15	3	2	10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센터 시설 및 환경구축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변경일	금 액 변 경			기 간 변 경	
		당초	추가	최종	당초	변경
계		204,050	33,099	237,149		
△△△센터 시설 및 환경구축공사	'15.7. 30	98,450	15,609	114,059	'15.3.5.~3.19	'15.3.5.~4.2
△△△ 전시홍보관 및 카페테리아 구축	'15.7. 8	99,000		99,000	"	"
△△△ 간판제작	"	6,600	17,490	24,090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재)대구테크노파크 회계규정 제38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고,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 시설 및 환경구축공사 등 3개 사업은 개소식(2015.4.3) 하루전에 계약기간 및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15.6.30. ◇◇◇ 명칭 및 ▶▶ 3회 변경에 따른 변경건에 대하여 내부품의를 하고, 재무회계팀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5. 7. 8/ 7. 30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T/F팀장 등 직책수당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정관 제17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제40조 규정에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법정수당 이외의 임의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T/F는 임시조직이며 원장의 권한(위임전결 규정)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나 그에 따른 직책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외 6개 TF팀에서는 이사회 의결없이 2012. 9월부터 2015. 12월 현재까지 부장, 센터장, 팀장에게 총 50,556천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특히 △△△단(실장, 팀장1, 팀원1)은 실장, 팀장 등 2명 모두에게 직책수당 7,9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향후 각종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조직 운영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위한 국외연수 행사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예산 집행품의 총액 2,000만원 초과 행사용역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 위한 연수」 행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2013, 2014년 국외연수 용역은 특정인의 경험·자격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국외연수’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고, 시기가 예측되어 있는데도, 2015년의 경우 조달청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된 후 행사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국외연수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장 소	인 원	금 액	수의계약 사유	비고
2013	호주,뉴질랜드	10	43,274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2014	프랑스,스위스, 이탈리아	14	58,733		
2015	호주,뉴질랜드	10	54,417	행사이전 용역수행 어려움 (1차 입찰결과 참여자가 없어 유찰)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앞으로 직원들이 회계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수의계약 사업자 요청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테크노파크

내 용

- 대구광역시 ▲▲구 등 3개 지자체에서 2013. 7. 1 ~ 2015. 12. 31까지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사업)을 추진하였다. 3개 지자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 8. 19 (재)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회계관계 법령,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재)대구테크노파크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지자체)는 회계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 그런데도, 3개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TP)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토록 부당하게 요청하였으며 보조사업자(TP)는 회계관련 법령과 TP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자체에서 추천한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회계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등 2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법인포인트 카드 적립 및 사용 부적정

관계 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세입조치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적립하여, 감사일 현재 까지 【표】와 같이 9,442천원을 누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며, ▲▲▲센터에서는 2015.3.31 누적된 포인트 400천원으로 상품권을 신청하여 담당자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부서별 카드포인트 적립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비씨카드		비고
		대구은행	기업은행	
합계	9,442,559	8,410,458	1,032,101	
▲▲실	6,254,156	5,621,112	633,044	
△△단	1,241,124	1,241,124		
◁◁센터	1,542,062	1,360,501	181,561	
▶▶센터	183,281	177,604	5,677	
▷▷센터	160,120	-	160,120	
○○센터	61,816	10,117	51,699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현재까지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즉시 세입조치 하시고, 매년 발생하는 카드포인트에 대해 세입조치 및 바이오헬스융합센터에 보관중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지출시 우선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국외출장자에 대해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행정지원-101, 2012.10.22)을 수립하여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방지를 위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출장자는 공무여행 후 15일 이내 적립·활용사항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은 단 1회뿐이며, 2014년 6월 이후 공무 국외출장자 155명에 대한 항공마일리지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등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수립된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에 의거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 향후 공무국외여행시 항공권 확보나 좌석등급 상향 등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건물시설관리용역 계약 및 보험 사후정산 부적정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용역(시설, 주차, 경비 등)은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므로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함에도 제한(중기간), 총액, 적격심사, 장기계속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여 (주) △△과 2012. 12. 21. 장기계약(2013~2015, 3년)을 체결하고,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입찰공고문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시설관리, 경비용역을 수행한 실적 금액을 2,850,103,430원”으로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낙찰자 선정에 과도한 제한을 둔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대가 청구시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 용역 및 연도별 청소용역을 시행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42,729,914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건물관리용역 4대보험 정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용역기간	계약업체	지급보험액	실납부액	정산금액	비고
시설				합계	24,027,412	
	2013	(주)△△개발	42,227,496	34,100,360	8,127,136	
	2014		43,280,196	34,806,270	8,473,926	
	2015		38,236,990	30,810,640	7,426,350	
청소				합계	18,702,502	
	2013	▲▲▲	17,590,908	12,675,390	4,915,518	
	2014	(주)▷▷환경	19,305,084	12,353,410	6,951,674	
	2015. 10월	(주)▽▽안전	19,741,730	12,906,420	6,835,310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시설 및 청소용역 보험 추가지급분 42,729천원을 정산 또는 회수 처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에 대해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행사비 집행 부적정

관계 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 복리후생비 중 직원의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60호)에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 축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5년, 10년, 15년의 장기근속자에 대해 각각 100, 200, 3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포상운영지침을 부적정하게 제정(2015.10.01)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행사비는 초청장, 기념품,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등 제작,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년~2015년 재단설립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장기근속직원 35명에 대해 11,85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포상운영지침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항을 개정하시고, 앞으로 행사비 집행 등에 있어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 및 △△△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외부강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임직원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2014.1.1~15.12.3까지 총 76명의 임직원이 435회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외부강의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였음에도 외부강의에 대한 허가 등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기준 및 회수 등에 기준을 제시하고, 외부강의 승인시 복무관련 사항 검토하여 승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복지카드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13년부터 복지포인트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직원의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정친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나, 시내주유비, 자녀학원비, 내의 구입 등 복지카드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사용하였음에도, 확인 절차없이 월별 카드사의 청구에 의거 지출하였다.
- (재)대구테크노파크 회계규정 제31조에 따르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해당 지출 계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퇴사 및 휴직자 8명의 복지포인트 초과지급분 909천원을 해당 지출계정으로 반납하지 않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복지카드 사용용도와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회계규정에 따르면 심야시간(23시~익일6시) 및 공휴일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열람을 받아야 함에도, 심야시간 사용 건 3건(571천원)에 대하여 사유서를 미첨부하였고,
- 도서구입, 행사비 등 업무추진 목적이 아닌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건은 참석자 소속, 주소, 성명을 기재한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나, 참석자 명단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 등 4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대구테크노파크 인사규정」 제44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30일분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으로 산출하였으며, 재직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닌 근무개월로, 1년 미만 근무월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누진개월을 적용하여 1년으로 산정함으로써, 【표】와 같이 총 93명에게 27,27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퇴직금 지급현황(2012. 9. ~ 2015. 10)

(단위:천원)

지급인원	기지급액	정산액	차액	기지급 퇴직금	고용노동부 고시 퇴직금
93명	1,056,770	1,029,500	27,270	$\{ \text{평균임금} \times (\text{총근무개월} / 12) \}$ $+ \{ \text{평균임금} \times (\text{누진개월} / 12) \}$ *퇴직일 직전 최근 3개월 지급 받은 임금총액/3	*1일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향후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퇴직금 정산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련 규정과 규칙을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지출결의서 회계계정 오적용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대구테크노파크 회계규정」에 따르면 지출결의서 작성시 예산계정과 회계계정을 정확히 작성하고 지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지출 승인하여야 한다.
- △△△센터에서는 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3. 2월 ~ 2014. 12월까지 총 44건(4,826천원)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여비 등 회계계정을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분할구매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장 5호 라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도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한다.
- 또한, (재)대구테크노파크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사업별로 분기내 동일물품(용역)에 대해 한 업체와의 계약이 2건 이상, 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수의계약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 △△센터는 「▲▲▲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물품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PC, 모니터 등 동일업체에 총 3회에 걸쳐 14,179천원, ◇◇단은 ▷▷양성사업 재료를 구입하면서 동일업체에 총 6회 25,025천원, ►►센터는 실습재료 구입시 동일업체에 총 6회 17,316천원을 5백만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향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물품(재료) 구매시 연간 소요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괄구매, 단가계약 등 예산절감 요인을 검토하여 구매계약을 추진하시고,
-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회계규정 및 관련지침을 정비하시고, 직원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센터 장비활용수수료 수익금 자금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재정 자립화를 위하여 기 구축장비(분석, 시생산) 활용 지원을 통한 장비사용료 수익 극대화, 운영자금 소요 분석에 따른 단기보유 보통예금 최소화를 통한 자금 운용 수익 극대화 등 여러 과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잔액 10억원이 넘는 장비활용수수료 수익금을 ◎◎은행 ☆☆☆☆예금(이자율 0.1%) 계좌 1곳에 관리하여 연도별 평균 1,598천원의 이자수익을 얻는데 그쳐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표】 △△센터 장비활용수수료 수익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이월액	수입	지출	잔액	이자발생액
2012	1,340,108	361,247	3,000	1,698,355	1,320
2013	1,698,355	492,244	49,247	2,141,352	1,733
2014	2,141,352	370,428	333,444	2,178,336	1,899
2015.11월 말	2,178,336	356,750	243,392	2,291,694	1,442
연평균	1,839,537	395,167	157,270	2,077,434	1,598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거액의 장비활용수수료 수익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센터 장비 화재보험 미가입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자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재)대구테크노파크의 업무용 부동산 및 주요 동산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2005년부터 구입한 20,000천원 이상 장비 ▷▷전자현미경 & ○○시스템 등 111개(27,679,058천원)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표】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장비 현황

(단위: 천원)

종류	수량	구입금액
▷▷전자현미경 & ○○시스템 등	111	27,679,058

※ 조성후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센터 주요 장비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물품관리규칙」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의 취득과 사용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물품의 재고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실에서는 2014년 6월 재단자산관리시스템을 자체개발하고 2014년 7월 재단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2014년 9월 재단 자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물품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은 수립한 적이 없으며 물품 재고 조사는 2년간(2013년, 2015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의 경우 자산현황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표】 물품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기계장치		비품		차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3	62,560,091	3,198	605,834	1	24,000

※ 금액 : 2014년 자산평가액 및 2015년 구입비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앞으로 「물품관리규칙」에 따라 매년 물품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 재고 조사를 실시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센터 임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보증금, 임대료, 운영비)에 따르면 각종 제세공과금, 건물관리유지 비용, 물가상승 또는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운영비 등 임대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서면통지한 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실에서는 【표】와 같이 2006~2007년 사이 원활한 건물유지, 소요비용 증가 및 건물관리 채산성 악화로 임대기준을 인상한 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외 경기침체, 지원기관 임대기준이 일반기업 기준보다 높은 불합리 등을 사유로 입주기업 임대기준을 인하 변경하였으나, 이후 감사일 현재(2015. 12. 11.)까지 임대기준 조정에 대한 검토없이 임대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2007년 1월 인상후 2015년까지 조정하지 않고 있다.

【표】 □□센터 임대기준 변동현황

(단위 : 원/평)

시행일		2006.10.1.	2007.1.30.	2009.2.1.	2009.12.22.
벤처기업	보증금	240,000	350,000	150,000	150,000
	월임대료	8,000	12,000	12,000	12,000
	관리비	12,000	14,000	14,000	14,000
예비벤처기업	보증금	300,000	폐지	폐지	폐지
	월임대료	12,000			
	관리비	12,000			
지원시설	보증금	300,000	협의	협의	200,000
	월임대료	12,000	협의	협의	20,000
	관리비	12,000	14,000	14,000	14,000
일반기업	보증금	400,000	450,000	200,000	200,000
	월임대료	20,000	20,000	20,000	20,000
	관리비	12,000	14,000	14,000	14,000
사유	원활한 건물유지	소요비용 증가 및 건물관리 채산성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외 경기침체	지원기관 임대기준 불합리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물관리유지 비용, 물가상승 등을 검토하여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운영비 등 임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센터 장비운영 규정 미 제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각 센터에서는 구축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합리적인 운영관리, 의뢰시험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산정 기준을 정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평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고객의 장비이용 및 시험의뢰에 따른 시험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험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센터로서의 자격, 공정성, 결과의 판정이나 운영상의 성실성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에 대한 참여 제한, 고객과 관련한 시료 및 시험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표】 센터별 장비운영규정 현황

△△센터	▲▲센터	▶▶센터	○○센터
-	· 장비운영규정	· 시생산 시설 장비 관리 가이드라인 · 연구개발 장비 관리 가이드라인 · 공동 Dental Lab. 설비 및 덴탈 첨단생산장비 운용 방안	· 장비운영관리규정

- ▶▶센터에서는 장비운영관리규정 또는 장비관리 가이드라인 등 장비에 대한 도 규정도 없이 ▶▶시험소 장비요율표에 따라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업무협약, 공용활용장비 이용 대상 확대 등 상황변화 따라 내부결재로 장비를 운영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앞으로 장비운영규정을 센터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을 해야 하지만 공통사항은 통일되게 하시고, △△센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을 장비운영규정을 제정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 Protocol 표준시험시스템 구매에 따른 낙찰자 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기술)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기술)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표】 계약 현황

사 업 명	개 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도 급 자
△△△ Protocol 표준시험시스템 구매.	GCP, PTCRB에서 규정하고 있는 GERAM, UTRA, E-UTRA 등 국제표준인증시험용 장비	3,637,953천 원 (2015. 4. 15)	2015. 6. 23.	※※※※※ 대표 ☆☆☆☆☆☆

-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낙찰자선정방법을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자 결정’하는 ‘2단계입찰’로 하였음에도,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기술)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1인의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등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낙찰자로 결정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앞으로 공고문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2단계경쟁입찰’로 정하여 놓고 제출서류와 붙임서류(입찰사양서)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하는 등 낙찰자 선정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건강진단 위탁기관 선정 및 검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제42조(건강검진)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종합건강검진 위탁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연구소 등으로부터 건강진단에 대한 제안(검진항목 및 검진요금)을 받아 직원에게 공개한 후 선택의 폭을 넓게 갖도록 함이 적정함에도, 2013와 2014년도는 2~3개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에 대한 제안(검진항목 및 검진요금)을 받아 가격협상도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건강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건강검진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건강검진기관을 1년 정도 재연장 가능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하여 건강진단기관을 2~3개 의료기관으로 정함으로써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선택폭을 한정되게 선정하였다.

【표】 건강검진 위탁기관 선정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위탁기관	: ★★★★★병원 : ●●●●●●●	: ★★★★★병원 : ●●●●●●● : ○○○○○○	: ★★★★★병원 : ●●●●●●● : ○○○○○○	

- 또한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직원 또는 가족의 검진완료 후 14일 이내 검진 결과(검진필름 등이 수록된 CD 및 출력물 포함)를 개인에게 전달하고, 검진 종료 시 14일 이내 검진결과(전 직원 검진결과 등이 수록된 CD 및 출력물 포함)를 (재)대구테크노파크에 전달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건강검진을 의료기관별 제안항목에 맞게 검진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완료하였다는 명단만 통보받고 검수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앞으로 건강검진 위탁기관을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연구소 등으로부터 건강진단 제안을 받아 직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갖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위탁기관이 선정될 경우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서 규정된 대로 검진여부 확인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자료작성시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의 사업은 크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은 수탁사업수익, 민간부담금수익,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은 임대료수익, 장비활용수익, 이자수익, 기술료수익, 시험생산수익, 기부금수익, 기타용역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익사업의 장비활용수익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장비활용수익의 경우 자료간에 금액이 서로 상이한 사실이 있다.
- 연도별 자료를 보면 전국 테크노파크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기관경영실적 평가자료상의 장비활용 수수료수입과 재무제표의 운영성과표상의 장비활용수익 금액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센터별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상의 **2014년** 장비활용수수료수입 금액과 재무제표의 운영성과표상의 장비활용수익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수익의 인식기준 차이, 내부사용분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먼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공급자의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운영성과표상의 장비활용수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실적평가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수익의 인식기준 차이**를 보면 회계상으로 발생주의가 원칙이므로 운영성과표상 장비활용수익은 발생주의로 계상하였으나 다른 자료에서는 일부 부문은 발생주의로, 일부 부문은 현금주의로 기재하여 부문간에도 일관성없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내부사용분**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시 현물사용분으로서 운영성과표에서는 제외하여 순수 장비활용수익을 계상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서는 내부 현물사용분도 포함하여 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수입액 산정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아니므로 수익금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하며, 수익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장비를 활용하였으나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장비활용시간과 활용수익 간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자료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하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자료에 기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기재 등)도 함께 기재하여 주어야 하며 만약 연도별로 작성기준이 다르다거나 부문별로 작성기준이 다르다면 그 자료의 이용가치 및 비교가능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자료 작성시 일관된 기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 용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표】 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른 장비활용율은 14년 65.82% 15.9월 59.57%이나 실제 외부자 사용시간 대비 활용율은 14년 29.48%, 15.9월 26.94%로 인해 수수료 수입이 저조한 상태이다.

【표】 장비활용현황

(단위:%)

구분	연도별	전체장비		최근 구입장비(12~15.9월)	
		활용율	외부사용 활용율	활용율	외부사용 활용율
합계	2014년	65.82	29.48	50.61	23.76
	2015.9월	59.57	26.94	53.23	25.99
△△센터	2014년	86.58	39.65	61.58	19.03
	2015.9월	78.07	38.47	56.49	11.36
▲▲센터	2014년	79.51	42.25	22.83	10.92
	2015.9월	58.57	17.89	78.50	41.70
▶▶센터	2014년	35.79	14.96	44.69	30.61
	2015.9월	36.41	16.61	44.61	35.78
○○센터	2014년	44.59	15.28		
	2015.9월	44.27	16.52		

※ 활용율은 외부자 사용기간 뿐만 아니라 교정 및 자체 검사시간, 내부연구과제 현물사용시간, 연구교육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나, 외부사용 활용율은 내부 현물사용분을 제외한 순수 외부자 사용시간과 수수료임. ▶▶센터의 경우 '12~15.9월에 구입한 장비가 없으므로 제외함

- 또한 최근 12년~15.9월 구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활용율은 14년 50.61%, 15년 9월 53.23%이고, 외부자 사용 대비 활용율은 각각 26.94%, 25.99%로 최근에 구입한 장비의 활용율이 더 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오래된 장비일수록 노후화 되기 때문에 활용율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으나, (재)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전체 장비 활용율보다 최근에 구입한 장비의 활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구입시 수요 예측 등 책임 있는 조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전반적인 장비 활용율이 저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 각 센터별 장비 구입시 수요예측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장비 활용율 및 이에 따른 수입 증대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